

수수료(제15조 관련)

1. 인증신청수수료

- 가.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생산지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만원으로 한다.
-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다. 신규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포함한다), 정기검사, 인증의 변경신청시 인증신청 수수료는 모두 같다.

2. 공장심사 수수료

- 가. 출장비
 - 1)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
- 나. 심사수당
 - 1) 금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 3)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前)처리 비용

품 목		수수료(원)	비 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분류에 따른 전처리 비용	관류, 밸브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	300,000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류)	774,000	
	표충용 재료(용제 포함)	3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편(試片) 제작상태
	표충용 재료(용제 미포함)	1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편 제작상태

비고 : 분석을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컨디셔닝을 생략한 경우(세척, 용출시험만 시행)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나. 시험분석 비용

분석 항목	수수료(원)	분석 항목	수수료(원)
카드뮴	30,000	색도	10,000
수은	23,000	탁도	10,000
셀레늄	30,000	잔류염소의 감량	15,000
납	30,000	2,4 톨루엔디아민	59,000
비소	30,000	2,6 톨루엔디아민	59,000
니켈	30,000	폼알데하이드	70,000
6가 크로뮴 [chromium(6+)]	20,000	사염화탄소	60,000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20,000	아세트산비닐	45,000
시안	27,000	스티렌	45,000
플루오린(불소)	30,000	1,2-부타디엔	45,000
아연	20,000	1,3-부타디엔	45,000
철	20,000	N,N-디메틸아닐린	45,000
구리	20,000	1,2-디클로로에탄	45,000
소듐(나트륨)	20,000	1,1-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망간	20,000	1,1,2-트리클로로에탄	45,000
염소이온	2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45,000
중발잔류물	15,000	벤젠	45,000
음이온계면활성제	31,000	에피클로로히드린	45,000
페놀류	93,000	디클로로메탄	45,00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5,000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맛	5,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5,000
냄새	5,000	1,1,1-트리클로로에탄	45,000
아민류	145,000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